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13 발의연월일: 2021. 5. 27.

발 의 자: 강대식·조경태·권영세

김상훈 · 김승수 · 김용판

박수영 • 백종헌 • 조수진

허은아 · 홍석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·공개토록 하여 공직을 이용한 병역비리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하지만 신고의무자인 고위공직자가 본인 및 배우자·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더라도 병무청이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신고의무자의 신고에만 근거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병무청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 고자 함(제4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4條(申告時期와 申告機關등) ①	第4條(申告時期와 申告機關등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대상
	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
	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
	아 법원행정처장에게 「가족관
	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
	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
	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아
	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
	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
	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
	<u> 여야 한다.</u>